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15. 7.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6월 2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5일

○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15년 6월 22일 ~ 6월 23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15년 6월 26일

다. 상정일자 : 제197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위원회(2015. 6. 29.)

제197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위원회(2015. 6. 30.)

제197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위원회(2015. 7. 1.)

제197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위원회(2015. 7. 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양 재 연

가. 제안이유

-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사항을 관련법규 및 지정된 기준에 의하여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마포구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마포구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제출내역

-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결산감사의견서

- 재무보고서
- 결산증빙자료(결산서에 포함)
- 예비비 지출(결산서에 포함)
- 기금 결산(결산서에 포함)

다. 주요내용

(1)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

- 예산현액 486,396,232,565원
(전년도 이월금 14,142,837,565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94,049,966,673원이고
지출액은 399,305,081,326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94,744,885,347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 시 이 월 4,015,848,000원
 - 사 고 이 월 7,794,919,453원
 - 보조금집행잔액 4,560,588,78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373,529,112원임.

(2)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 예산현액 414,369,630,565원
(전년도 이월금 14,142,837,565원을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20,860,777,295원이고
지출액은 370,878,977,50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49,981,799,795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 시 이 월 4,015,848,000원
 - 사 고 이 월 7,736,180,234원
 - 보조금집행잔액 4,497,553,5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732,218,061원이다.

(3) 2014회계연도 3개 특별회계 내역

가. 총괄 결산상황은

- 예산현액 72,026,602,000원
(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3,189,189,378원이고
지출액은 28,426,103,826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44,763,085,552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 시 이 월 0원
 - 사 고 이 월 58,739,219원
 - 보조금집행잔액 63,035,28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641,311,051원임.

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 예산현액 452,19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4,108,290원이고
지출액은 366,018,298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68,089,992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보조금집행잔액 25,648,71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441,280원임.

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 예산현액 64,599,263,000원
(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4,773,501,006원이고
지출액은 23,491,401,729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41,282,099,277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 시 이 월 0원
- 사 고 이 월 58,739,219원
- 보조금집행잔액 37,386,5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185,973,488원임.

마.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는

- 예산현액 6,975,145,000원
수납액은 7,981,580,082원이며
지출액은 4,568,683,799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3,412,896,283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함.

(4) 2014회계연도 예비비

-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마포농수산물특별회계에서
1,139,40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117,294,219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22,106,781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5) 2014회계연도 기금은 16종으로서

- 전년도말 조성액은 29,628,582,558원에서
- 당해연도 조성액은 19,084,024,640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은 10,929,445,8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7,783,161,318원이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상 수]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143억 6,963만 565원이며, 수납액은 4,208억 6,077만 7,29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 초과징수하였음.
-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세입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35.4%로 가장 많고, 지방세 수입 20.1%,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3%, 세외수입 12.5%, 지방교부세 2.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3.7%가 되겠음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증감 현황

(단위 : 원)

과목	예산현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2014년	414,369,630,565	420,860,777,295	101.6%
2013년	370,035,899,150	376,479,087,311	101.7%
증감	44,333,731,415	44,381,689,984	△0.1%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443억 8,168만 9,984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실적을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지방세수입은 36억 233만 7,1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35억 3,189만 1,648원이 감소하였음
- 세외수입이 감소한 주된 원인은 정부의 세입예산과목 편제 전면 개편에 따라 2013년까지 세외수입에 편성되어 있던 전입금 등의 내부거래와 잉여금이 신설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의 과목으로 이동 편성하였기 때문임
- 일반회계 결손 처분액은 지방세 2억 3,816만 4,850원과 세외수입 20억 862만 7,160원을 합한 22억 4,679만 2,010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이 16억 9,201만 8,630원(75.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효소멸 5억 4,855만 5,410원(24.4%), 행방불명 619만 160원(0.3%), 배분금액 부족 2만 7,810원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전년 대비 세출예산현액은 443억 3,373만 1,415원, 지출액은 373억 9,042만 9,471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월액은 23억 9,080만 9,331원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93억 3,411만 1,275원 증가한 317억 3,862만 4,831원으로 집행율은 직전회계연도에 비해 0.6%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증감 현황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율
2014년	414,369,630,565	370,878,977,500	11,752,028,234	31,738,624,831	89.5%
2013년	370,035,899,150	333,488,548,029	14,142,837,565	22,404,513,556	90.1%
증감	44,333,731,415	37,390,429,471	△2,390,809,331	9,334,111,275	△0.6%

◆ 집행잔액 원인 분석

(단위 : 원)

부서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31,738,624,831	4,737,172,060	1,180,720,120	18,403,158,791	4,511,619,860	2,905,954,000
공보담당관	83,203,823		20,665,000	62,538,823		
감사담당관	29,824,710	900,000	3,125,880	25,798,830		
안전행정국	5,381,426,337	262,923,840	511,116,000	4,399,941,916	207,444,581	0
기획경제국	4,225,300,515	53,527,220	124,293,000	973,583,144	167,943,151	2,905,954,000
복지교육국	16,461,844,146	4,271,380,000	362,333,150	9,553,297,503	2,274,833,493	0
도시환경국	571,068,030	1,100,000	109,217,000	368,501,760	92,249,270	0
교통건설국	2,456,850,060	106,471,000	35,659,090	2,266,797,685	47,922,285	0
보건소	2,529,107,210	40,870,000	14,311,000	752,699,130	1,721,227,080	0
구의회사무국	158,822,550	39,600,000		119,222,550		

-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살펴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84억 315만 8,791원(58.0%)으로 가장 많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7억 3,717만 2,060원(14.9%), 보조금 집행잔액 45억 1,161만 9,860원(14.2%), 예비비 29억 595만 4천원(9.2%), 예산절감 11억 8,072만 120원(3.7%) 순이 되겠음

(3) 특별회계 세입결산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20억 2,660만 2천원, 세입은 731억 8,918만 9,378원으로 징수율은 101.6%이며 직전회계연도 101.7% 대비 0.1% 감소하였음

◆ 세입 징수율 증감 현황

(단위 : 원)

구분	합계	의료보호기금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장
2014년	101.6%	96.0%	114.4%	100.3%
2013년	101.7%	91.0%	146.3%	97.9%
증감	△0.1%	5.0%	△31.9%	2.4%

(4) 특별회계 세출결산

-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720억 6,602만 2천원 중 284억 2,610만 3,826 원을 지출하고 5,873만 9,219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435억 4,175만 8,955원으로 집행율은 39.5%가 되겠음 (직전회계연도 집행율 21.6%)

◆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원)

과 목	집행잔액	원인별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43,541,758,955	311,562,000	6,306,079,673	63,035,282	36,861,082,000
교통행정과	39,904,811,000	261,955,000	4,823,614,430	37,386,570	34,781,855,000
교통지도과	1,144,311,052	49,003,000	1,095,308,052		
지역경제과	2,406,461,201		327,234,201		2,079,227,000
생활보장과	86,174,712	604,000	59,922,000	25,648,712	
어르신복지센터	990		990		

- 특별회계 집행잔액 사유는 예비비가 84.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4.5%, 예산절감이 0.7%, 보조금 집행잔액 0.1% 순으로 발생하였음

(5) 기금 결산

- 기금은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한 ‘자체기금’과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법정기금’이 있으며, 법정기금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운영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가 있음
- 마포구에서 설치 관리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16개 기금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296억 2,858만 3천원이며(통합관리기금 제외), 2014 회계연도에 190억 8,402만 5천원을 조성하고, 109억 2,944만 7천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377억 8,316만 1천원임.

◆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기금 수	16개	15개	15개
회계연도말 현재액	37,783,161	29,628,583	37,593,492

(6) 검토 의견

1] 세입 결산

- 2014년 마포구 예산은 경기 하락과 복지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구 재정 의 어려움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48억원을 전입받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편성한 바,
- 향후 세입 증대를 위해 고액 및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으로 징수율을 제고함은 물론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한 분석 및 추계로 세입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② 세출 결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율은 89.5%로 직전회계연도 90.1% 대비 0.6% 하락하여 317억 3,862만 4,83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 불용이 반드시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 일부는 예산 전액을 미집행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불용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의 부진 또는 예산 과다 편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일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높게 불용되고 있음
- 이와같은 높은 불용율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불용액 비중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시 보다 치밀한 사업검토와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세출예산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③ 예산 전용 및 이월

- 예산 전용은 18건 3억 6,631만 5천원으로, 세출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만큼 불가피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용 사유가 타당한 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4건 40억 1,584만 8천원, 사고이월 20건 77억 3,618만 234원으로, 예산이 이월될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지연됨으로서 주민 불편과 구정에 대한 신뢰저하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의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이월사업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세입 결손

- 일반회계 세입 결손처분액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23.4%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470.6%로 급등한 바, 주요 증가 사유는 지난연도 수입의 결손액이 2013년에는 3,875만 3,400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2억 3,176만 5,480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 대책 시행으로 결손 처분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 일반회계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3년	증감
합 계	2,246,792,010	1,821,252,070	425,539,940 (23.4%)
지방세	238,164,850	41,739,260	196,425,590 (470.6%)
세외수입	2,008,627,160	1,779,512,810	229,114,350 (12.9%)

5 예비비 지출

-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후 승인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인 바, 2014 회계연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예비비를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 2014.5.28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2015 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예비비 규모가 축소된 만큼 향후 예비비 집행은 입법 취지에 맞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등 예비비의 지출 한계를 준수해야 할 것임

※ 일반회계 예비비 현황

(2015.6.11현재,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예비비 편성		예비비 집행		비 고 (서울시예비비 편성액 순위)
		편성액㉡	비율 (㉡/㉠)	집행액㉢	집행율 (㉢/㉡)	
2015년	393,930,079	2,356,800	0.6%	-	-	19위
2014년	366,237,127	3,760,605	1.0%	854,651	23%	16위
2013년	321,734,489	2,878,782	0.9%	1,715,629	60%	23위

⑥ 기타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뿐만 아니라 장래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결산 심사는 예정된 계획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드시 환류(Feed-back)되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 또한, 지출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원칙적으로 예산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부적정한 지출은 없었는지 여부 등의 심의를 통해 우수 사례는 적극 권장하고, 부당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향후 되풀이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